

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(DB)

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	담당	책임자

전 산 인 자 란

1. 기업정보

20 년 월 일

기업명	퇴직연금 계좌번호
예약지급일	* 상품 매도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급여 신청 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.

2. 이전내용

이전구분	이전사유	이전방식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전환	현물이전*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열사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합병/영업양수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이전 - 가입자 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전환**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열사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/영업양수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액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액지정방식 : _____ 원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품지정방식(뒷장 필수 기재)		
이전받는 금융기관	운용관리기관	자산관리기관	금융기관명	상품지정방식은 뒷장 기재
			계좌번호	상품지정방식은 뒷장 기재
			예금주	상품지정방식은 뒷장 기재

* 현물이전은 당행 간 DB제도로 전부이전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** 제도전환 유의사항 :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후, DB제도로 **재전환 불가**합니다.

3. 이전 가입자(이전구분이 '일부이전-가입자이전'인 경우 기재)

가입자명*	생년월일(주민번호)	제도전환/전출일자	서명 또는 (인)	지급요청금액
			서명 또는 (인)	
			서명 또는 (인)	
			서명 또는 (인)	
			서명 또는 (인)	

* 이전 가입자가 많은 경우 '일부이전 일괄명부'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사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민번호로 작성)

4. DB 매도상품지정 (이전구분이 일부이전 또는 금액지정방식인 기재)

매도순위	상품명	상품계좌번호	매도금액(원/좌)

* 출력물로 제공하는 '매도순서지정신청서'를 작성하는 경우 생략 가능

5. 이전 받는 기업 확인(이전사유가 계열사 이전, 합병/양수도인 경우 기재)

※ 이전 받는 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징구

이전하는 기업명	와	이전받는 기업명	는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을 합의합니다.
이전받는 기업 :			(법인인감)

다음 페이지 계속



6. 현물이전 (현물이전 신청하는 경우 기재)

현물이전 지급 완료 전날의 현물이전 하는 상품의 평가금액으로 이전되며, 이전 후 상품을 해지(급여지급, 계약해지 등)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 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기업명 : 서명 또는 (인)

7. 상품지정방식 계약이전 세부내용

매도상품	상품명				상품계좌번호	만기일
이전받는 금융기관	입금비율*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
	금융기관명					
	계좌번호					
	예금주					

* 매도 지정 상품을 모두 팔아 입금비율만큼 이전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
본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청구하며, 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신청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기업명 : 서명 또는 (인) 신탁관리인 : 서명 또는 (인)

※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, 신탁관리인은 전부이전인 경우에만 작성

[유의사항]

-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
 -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)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 - ▶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: 기업(사용자)
 -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(신청서 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장이 완료된 날)을 포함하여 3영업일*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, 급여지급 신청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**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
 - *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(단,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)
 - **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%,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: 연 20%
- 전부이전인 경우 퇴직연금 계좌가 해지되며,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.
-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전 계약이전 거래시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상품의 매도금액은 신청 금액기준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은 100%, 수익증권 등은 105% 매도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 지급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은행이 정한 매도순서(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 '적립자산의 매각순서')로 상품을 추가 매도하여 지급합니다. 추가 매도에 따라 지급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상품 매도에 따른 지연으로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.

[제출서류]

전부이전시	일부이전시	금액이전시
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퇴직연금 계약이전 동의서 (당행간 이전시 제외) 4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괄양수도계약서(합병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4. 전출입공문(계열사이전인 경우)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괄양수도계약서(분할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

